

「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5월 1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29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7년 6월 20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장동기)

### 가. 제안이유

- 2000년 제정된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존치의 실익이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- 특히, 법률의 위임 없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6조에서는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입법의 범위 및 한계를 일탈할 소지가 있음.

### 나. 주요내용

- 「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」 폐지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본 조례는 평창군이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자산 등 유·무형의 가치를 군민 모두가 상호협력을 통하여 최적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, 순리와 상식 그리고 인정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고향, 살기좋은 고장 평창을 만들기 위하여 실천해야할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24일에 제정하였음.
- 그러나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존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, 조례안 제16조에서는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저촉됨.
- 따라서,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를 폐지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